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11.0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11.1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3년 07월 02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DB뉴욕라이프글로벌

자산관리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임금인상률 + 0.5%)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주식,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은 OCIO자산배분성장형 펀드로서,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및 DB디딤OCIO자산배분중립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대비 위험자산 비중 및 변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5% 이상 70%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화관련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환헤지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11.03)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E4227)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위험, 재간접 투자 위험, 해외 자산 등에 투자로 인한 국가 위험 및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별 환헤지를 시행합니다.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다양한 자산의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임금인상률 + 0.5%)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주식,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5% 이상 70%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6%이내	0.70	0.30	0.87	0.9340	155	255	360	585	1,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00	0.60	1.18	1.2340	126	259	399	699	1,5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3%이내	0.55	0.15	0.57	0.7841	110	194	283	473	1,0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70	0.30	0.73	0.8500	87	179	275	481	1,096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 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1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5/08/23 ~ 2026/08/22	2024/08/23 ~ 2026/08/22	2023/08/23 ~ 2026/08/22	2021/08/23 ~ 2026/08/2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09-11	23.13	16.43	0.00	0.00	16.0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9-13	22.69	16.09	0.00	0.00	15.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9-11	23.06	16.40	0.00	0.00	16.0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9-13	0.00	0.89	0.00	0.00	5.28
수익률 변동성	2023-08-23	9.85	8.90	0.00	0.00	8.54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용 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혼합)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4	2,712	16.02	13.63	14.31	12.37	10년 5개월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14.00	-			2년 1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IS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ETF의 과세처리 방법은 상장시장, 투자대상 등에 따라 상이하여 편입하고 있는 ETF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헤지비율은 해외 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헤지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 헤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환헤지비율이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어 목표 이상의 환율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table>
<tr><td>매입방법</td><td>▪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 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6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td></tr><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td></tr><tr><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tr><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table>※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년 11월 10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 (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td></tr></table></td></tr>
</table>

		(C)	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 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 투자자 등(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m)

[목 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E42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4228
수수료선취-온라인(A-E)	E422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42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42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42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42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E42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E42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4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4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42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42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42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E42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E42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42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424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미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시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개시(2023 년 07 월 02 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E42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E4228
수수료선취-온라인(A-E)	E422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E42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E42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E42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E42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E42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E42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E42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42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42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42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42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E42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E42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E42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E424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23.08.23	최초 설정
2024.06.21	- 환매대금 지급일 단축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4.1.1 시행)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3.1. 시행)
2024.08.30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08.01 시행 / 종류 S, S-P 수익증권 정의 변경)
2024.09.13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2025.05.16	- 종류 C-O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
2025.09.11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조항준 → 권순규) - 채권평가회사 추가(이지자산평가)
2026.07.29	- 일반형에서 모자형(자투자신탁)으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
2026.08.06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이진욱 → 이수현)

2026.09.0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및 산정기준 변경(3등급 → 4등급)
2026.11.10	투자신탁 회계감사 완료에 따른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1층 (대표전화: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8.26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0년 5개월	-DB자산운용 GIS본부 전략리서치팀(현직)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주식실/해외주식전략팀 -한화자산운용 글로벌자산배분팀 -교보악사자산운용 인덱스퀀트팀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2년 1개월	-DB자산운용 GIS본부 GIS운용팀(현직) -KB증권 WM Tech 솔루션부 알고리즘 솔루션팀 -NICE평가정보 기업정보운영실 DA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혼합)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4	2,712	16.02	13.63	14.31	12.37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14.00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IS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 현황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진욱	2023.08.23 - 2026.08.05
이수현	2026.08.06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조항준	2023.08.23 - 2025.09.10
권순규	2025.09.11 - 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8.26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0년 5개월	-DB자산운용 GIS본부 전략리서치팀(현직) -국민연금관리공단 해외주식실/해외주식전략팀 -한화자산운용 글로벌자산배분팀 -교보악사자산운용 인덱스퀀트팀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2년 1개월	-DB자산운용 GIS본부 GIS운용팀(현직) -KB증권 WM Tech 솔루션부 알고리즘 솔루션팀 -NICE평가정보 기업정보운영실 DA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_혼합)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수현	1982	책임 (팀장)	14	2,712	16.02	13.63	14.31	12.37
권순규	1995	부책임 (대리)			1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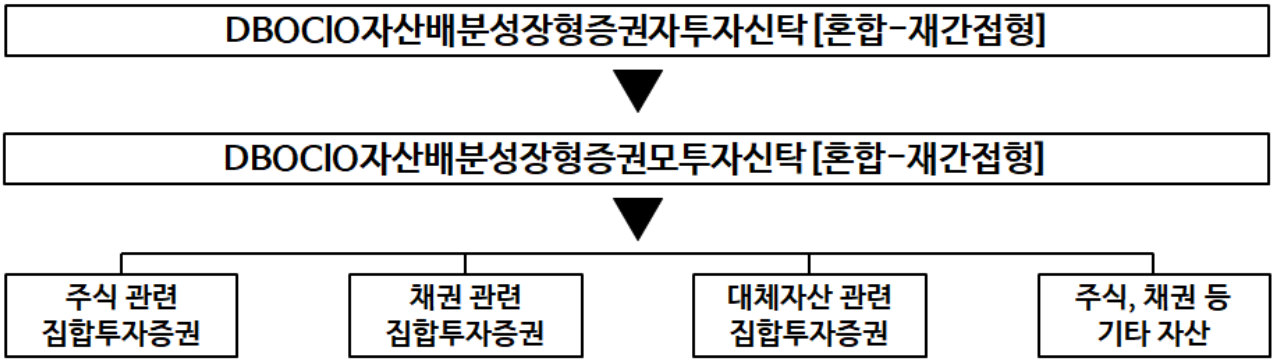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IS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 현황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진욱	2026.07.29 - 2026.08.05
이수현	2026.08.06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투자신탁 보수(연, %)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사무 관리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6% 이내	-	0.35	0.3	0.04	0.01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3% 이내	-	0.35	0.15	0.04	0.0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42% 이내		0.35	0.21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0.35	0.6	0.04	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가입 투자자	-	-	0.35	0.3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0.35	0.42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0.35	0.08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	-	0.35	0.03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	-	0.35	0.00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0.35	0.48	0.04	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	-	-	0.35	0.24	0.04	0.01

(C-PE)	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	-	0.35	0.5	0.04	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	-	0.35	0.25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0.35	0.05	0.04	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	-	0.35	0.06	0.04	0.0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0.35	0.13	0.04	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0.35	0.1	0.04	0.01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 투자자 등(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투자목적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다양한 자산의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임금인상률 + 0.5%)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주식,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집

		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③이 투자신탁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5% 이상 70%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및 선정 기준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을 실행하고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위험조정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선정기준은 자산군, 지역, 업종, 스타일, 듀레이션 등을 대표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시 순자산규모와 유동성, 총비용 등을 분석하여 선정합니다. 부동산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기구(REITs 등)의 경우 상기 기준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자산 및 배당률 등을 추가 분석하여 선정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이 투자신탁의 편입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중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들은 각국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유동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공시된 투자설명서, 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하며, ETF 외 집합투자증권의 분석은 블룸버그 등 시장데이터 제공업체를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DBOCIO 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 이상	신탁계약서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②	유동성자산	10% 이하 (단,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 가능)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①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⑥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대여 주1)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차입	20% 이하	

	주2)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및 환매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 ⑤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 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 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실사(Due Diligence)등 관련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주된 투자대상, 펀드 종류, 펀드 규모, 운용회사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공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vesco	https://www.invesco.com/us/en/financial-products/etfs.html
iShares	https://www.ishares.com/us/products/etf-investments
Schwab	https://www.schwab.com/etfs/invest-in-etfs
SPDR	https://www.ssga.com/us/en/intermediary/fund-finder
Vanguard	https://investor.vanguard.com/investment-products/list/etfs
KB자산운용	https://www.riseetf.co.kr/
삼성자산운용	https://www.samsungfund.com/etf/main.do
미래에셋자산운용	https://www.tigeretf.com/ko/main/index.do
신한자산운용	https://www.soletf.co.kr/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별 환헤지를 시행합니다.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 및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DBOCIO 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다양한 자산의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경기변동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한 매니저 판단에 따라 국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목표수익률(Target Return, 임금인상률 + 0.5% 내외)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 주식,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입/환매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수익률은 미래의 확정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목표수익률 산정 시 사용하는 임금인상률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분)" 자료 중, 30인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월정액 임금 연간 상승률의 과거 3년 평균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OCIO자산배분성장형 펀드로서, DBOCIO자산배분안정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및 DB디딤OCIO자산배분중립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대비 위험자산 비중 및 변동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2) 상세 투자전략

① 전략적 자산배분
- 투자목표(기대수익률, 허용위험, 투자기간 등) 분석 수행
-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투자목표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안 선정
- 각 자산별 하부자산 비중 결정
- 연간 CMA(Capital Market Assumption) 예측하고 CMA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축

② 전술적 자산배분

1) 실물경기변동과 금융시장 환경 분석
-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본 경기 사이클 분석(매크로 분석)
- 기업이익 변동 및 밸류에이션 분석(펀더멘털 분석)
- 유동성 및 재정/금융정책 분석(금융환경 분석)

2) 경기 변동에 따른 전술적 자산배분
- 경기 변동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주식, 국채/회사채/하이일드/신흥국 채권 투자
- 각 국가별 경기 국면 비교를 통한 지역 배분

③ 개별자산전략

1) 주식관련
- 경기 변동에 따른 가치/성장/모멘텀/퀄리티/저변동성 전략 중 유망 팩터 선정
- 밸류에이션 및 모멘텀을 감안하여 정성적 평가 병행

2) 대체자산 관련
-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인프라, 리츠 등 대체 자산 편입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수준 통제
- 금이나 원자재 등은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닌 헷지 관점에서 접근

④ 매니저 셀렉션
- 알파 전략과 베타 전략에 따른 투자 수단 선택
 • 지수복제 용이성, 정보비대칭성 vs. 효율적 시장 구분에 따라 분류
 • 패시브 투자를 통한 비용관리와 액티브 투자를 통한 알파 창출 전략 병행
- 각각의 전략에 적합한 ETF(Passive, Active) 투자 실행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예시)〉

(단위: 백만불, 억원/ 기준일: 2026.08.22)

자산군	종목명	운용사	블룸버그 티커	주된 투자자산	주된 투자전략	표시통화	운용규모
주식	iShares Core S&P 500 ETF	iShares (BlackRock)	IVV US Equity	해외주식	S&P 500 Total Return 4 JAN 1988 Index 추종	USD	889,839
채권	iShares Broad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iShares (BlackRock)	USHY US Equity	미국HY	ICE BofAML US High Yield Constrained Index 추종	USD	28,680
채권	Vanguard Intermediate-Term Treasury ETF	Vanguard	VGIT US Equity	해외채권	Bloomberg U.S. Treasury 3-10 Year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추종	USD	43,303
채권	SOL 국고채3년	SOL (신한자산운용)	438560 KS Equity	국내채권	KAP 국고채3년지수(총수익지수) 추종	KRW	814
채권	Vanguard Short-Term Treasury ETF	Vanguard	VGSH US Equity	해외채권	Vanguard Short-Term Treasury Index 추종	USD	30,966
채권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iShares (BlackRock)	EMB US Equity	해외채권	J.P. Morgan EMBI Global Core Index 추종	USD	14,897
채권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KODEX (삼성자산운용)	439870 KS Equity	국내채권	KAP 국고채 30년 총수익 지수 Active	KRW	3,494
주식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iShares (BlackRock)	IEMG US Equity	해외주식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Index 추종	USD	162,203
주식	iShares MSCI World ETF	iShares (BlackRock)	URTH US Equity	해외주식	iShares MSCI World Index 추종	USD	8,271
채권	SPDR Portfolio	State Street (SPDR)	SPIB US	미국IG	Bloomberg U.S.	USD	11,570

	Intermediate Term Corporate Bond ETF		Equity		Intermediate Corporate Bond Index 추종		
채권	SOL 국고채10년	SOL (신한자산운용)	438570 KS Equity	국내채권	KAP 국고채10년지수(총수익지수) 추종	KRW	1,138
주식	TIGER 200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	102110 KS Equity	국내주식	KOSPI 200 Index 추종	KRW	102,341
채권	Vanguard Long-Term Treasury ETF	Vanguard	VGLT US Equity	해외채권	Bloomberg US Long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추종	USD	10,623
채권	iShares High Yield Systematic Bond ETF	iShares (BlackRock)	HYDB US Equity	미국HY	iShares High Yield Systematic Bond Index 추종	USD	1,609

※ 상기 투자전략 및 투자종목은 작성 시점 기준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① 실시간 및 일간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 및 위험수준이 기대수준과 일치하는지 체크
 : 개별 종목 단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체크 및 개별자산 매니저 의견 청취
- 일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전략별 투자 논리와 시장 및 포트폴리오 특성이 일치하는지 여부 체크
 : 개별자산별 허용된 액티브/총위험 한도 내 있는지 모니터링

② 성과 및 위험 요인 분해

- 투자의사 결정 단계별 성과 요인분해로 실질적인 운용 피드백 제공
 : 전략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개별자산 전략 및 매니저 셀렉션 단계별 성과요인분해

③ 환위험 관리전략 : **부분환헤지**

이 투자신탁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의 5% 이상 70% 이하 수준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주요 투자국가(미국 등)의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이종통화간 교차헤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헤지를 포함)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환율변동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관련파생상품을 이용한 부분환헤지(외화표시 자산평가금액의 5%~70% 수준)를 실행하며, 환헤지비율은 해외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 통화와 기준가격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기준가격표시통화에 대한 환헤지가 실행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환헤지에 따른 거래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화관련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환헤지거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환헤지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헤지비율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의 장점 및 단점	이 투자신탁은 부분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외화자산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기본적으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헤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환헤지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계약환율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 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 되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④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ETF)들은 운용사 홈페이지, Factsheet 및 시장데이터 제공업체(Bloomberg, Factset 등)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ETF)의 성과, 기초지수대비 성과, 보유 종목 및 기타 펀드 운용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맞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ETF)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전략적 자산배분 및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탄력적으로 투자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외 자산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1) 유동성 리스크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시장성자산의 비중이 전년말 15% 이상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환매 대응에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비상조치계획

투자신탁의 유동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자산을 편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여, 환매 및 상환자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기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매 및 상환 연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규약의 환매연기 및 상환금 지급 조항에 따라 처리하며, 즉시 판매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반은 위기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요사항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위기대응에 필요한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합니다. 비상대책반 관련부서의 위기관련 분석 및 대응 대상은 각 부서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업무분담, 협조체계 유지 및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실행을 통해 위험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 : 환매대응방안 마련
* 운용부서 : 위기관련 정보의 모니터링 및 분석, 위기가 펀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투자금 회수 방안마련
* 마케팅부서 : 판매사를 통한 수익자 통지 및 대응. 환매 동향 파악
*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부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 검토 등

(비상대책반 구성) 반장: 해당 위기상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있는 부문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 반원: 업무관련본부장(본부가 없는 경우 팀장), 리스크관리담당본부장, 컴플라이언스담당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담당본부장, 반장이 지정하는 자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따로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부분환헤지전략으로 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자산의 자산별 기대수익률, 최대 하락율, 최대손실회복기간 및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 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헤지비율을 축소하거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 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 헤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환헤지비율이 목표환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어 목표 이상의 환율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 운용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의 투자자산인 해외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및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ETF 의 과세처리 방법은 상장시장, 투자대상 등에 따라 상이하여 편입하고 있는 ETF 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리츠(REITs) 투자에 따른 위험	리츠는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나 그 집합투자증권은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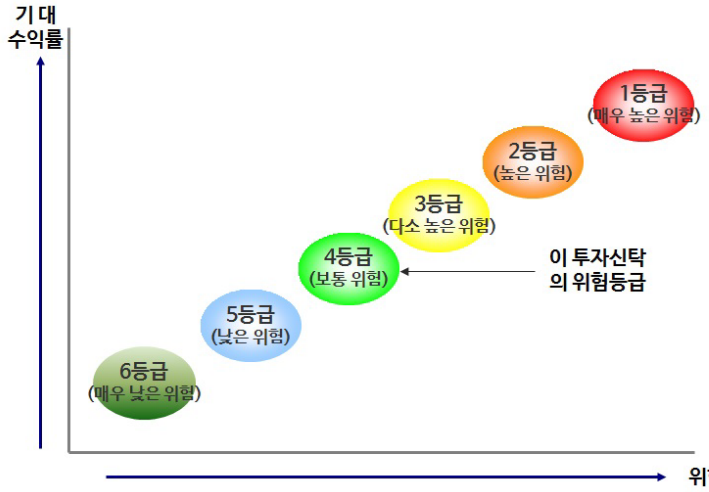
	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해당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지연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수익증권 환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며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환헤지를 실시하지만,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DB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사용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2026.08.22) 기준 변동성**은 **18.75%**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4등급(보통위험)**입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2023.08.23 최초설정		3
2026.09.09	3	4

등급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 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법 제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VaR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DB 자산운용주식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준투자권유준칙」 ‘II.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익자가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7시(오후 5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6영업일	7영업일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오후 5시) 경과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 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 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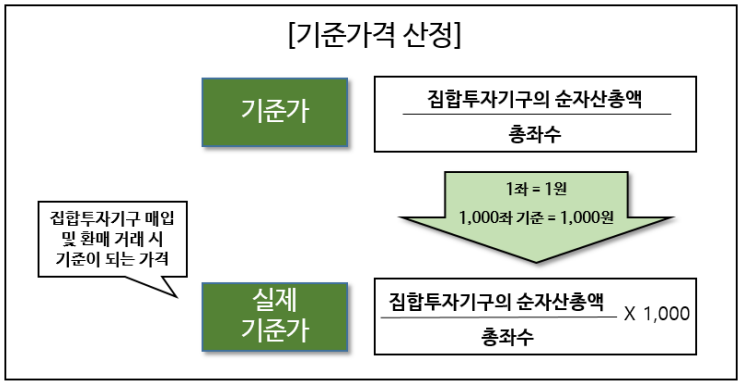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1좌당 1원)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 ·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 유가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6%이내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3%이내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42%이내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없음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인터넷가입 투자자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C-F)	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른 적립금은 제외한다)	-	-	-
수수료미징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	-	-

오프라인-퇴직연금 (C-P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판매	수탁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주1)	총 보수·비용 비율 TER주2)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주3)	동종유형 총 보수주4)	증권거래 비용주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35	0.30	0.04	0.01	0.70	0.0000	0.70	0.9340	0.87	0.2101
수수료선취-온라인(A-E)	0.35	0.15	0.04	0.01	0.55	0.0000	0.55	0.7841	0.57	0.21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35	0.21	0.04	0.01	0.61	-	0.61	0.76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35	0.60	0.04	0.01	1.00	0.0000	1.00	1.2340	1.18	0.21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5	0.30	0.04	0.01	0.70	0.0000	0.70	0.8500	0.73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0.35	0.42	0.04	0.01	0.82	-	0.82	0.9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35	0.08	0.04	0.01	0.48	-	0.48	0.6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0.35	0.03	0.04	0.01	0.43	0.0017	0.4317	0.6585		0.18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35	0.00	0.04	0.01	0.40	-	0.40	0.5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5	0.48	0.04	0.01	0.88	-	0.88	1.03		-
수수료미징구-	0.35	0.24	0.04	0.01	0.64	-	0.64	0.79		-

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35	0.50	0.04	0.01	0.90	0.0016	0.9016	1.1330		0.27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35	0.25	0.04	0.01	0.65	0.0008	0.6508	0.8795		0.22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0.35	0.05	0.04	0.01	0.45	0.0022	0.4522	0.6838		0.25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0.35	0.06	0.04	0.01	0.46	-	0.46	0.61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35	0.13	0.04	0.01	0.53	-	0.53	0.68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5	0.10	0.04	0.01	0.50	-	0.50	0.65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타 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TER)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15%]**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4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7)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35,958
금융비용	-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투자기간		1년차	2년	3년차	5년차	10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 및 보수·비용	131	206	284	454	95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5	255	360	585	1,257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 및 보수·비용	86	145	207	340	73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0	194	283	473	1,03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169	238	386	825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9	201	286	470	1,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수수료 및 보수·비용	103	210	323	566	1,289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6	259	399	699	1,5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6	396	902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7	179	275	481	1,0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 및 보수·비용	84	172	265	464	1,05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9	204	313	549	1,2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01	155	272	619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5	132	204	357	8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91	139	245	55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7	138	213	373	8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84	129	227	516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56	116	178	312	7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5	284	498	1,135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6	216	333	583	1,3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 및 보수·비용	66	134	207	362	825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1	166	255	447	1,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9	291	511	1,162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6	238	366	642	1,4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 및 보수·비용	67	137	210	369	839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0	185	284	498	1,1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5	146	256	583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0	144	221	387	8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O)	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61	593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3	128	197	345	78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111	171	300	683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0	143	220	385	8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 및 보수·비용	51	105	162	283	645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7	137	210	368	838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lass S 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3)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4)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시행되면서 집합투자기구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지급되는 단계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함

ISA 및 연금계좌 등 세제혜택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수익자의 경우 해당 세제혜택 규정에 따라 별도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이 적용됨으로 이 투자신탁이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

	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3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 원)

항 목	제 3 기	제2기	제1기
	2026.08.22	2025.08.22	2024.08.22
운용자산	38,281,805,752	7,786,749,163	9,135,625,180
유가증권	37,894,238,915	7,413,354,136	8,872,658,778
현금 및 예치금	387,566,837	373,395,027	62,966,402
기타 운용자산	0	0	200,000,000
기타자산	239,121,566	55,049,891	75,020,931
자산총계	38,520,927,318	7,841,799,054	9,210,646,111
기타부채	767,784,356	230,617,303	227,931,963
부채총계	767,784,356	230,617,303	227,931,963
원본	27,788,212,839	6,369,638,861	8,026,915,422
이익조정금	9,964,930,123	1,241,542,890	955,798,726
자본총계	37,753,142,962	7,611,181,751	8,982,714,148
운용수익	1,058,498,273	779,330,632	1,216,128,156
이자수익	20,588,588	12,094,773	12,066,719
배당수익	392,683,130	239,719,447	244,779,950
매매평가차손익	645,224,970	514,219,165	932,870,043
기타수익	1,585	13,297,247	26,411,444
운용비용	95,699,779	46,127,226	44,120,516
관련회사보수	81,317,493	34,387,745	36,798,317
매매수수료	231,488	116,393	85,215
기타비용	14,150,798	11,623,088	7,236,984
당기순이익	962,798,494	733,203,406	1,172,007,640
매매회전율	0	0	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3기 0원 2기 0원 1기 0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3기 0원 2기 0원 1기 0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주)		거래금액(A)	거래비용 주)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	0	0.0000	0	0	0.0000
주식 이외의 증권	150,749,352,797	35,688,759	0.0237	23,200,601,624	9,877,213	0.0426
장내파생	0	0	0.0000	2,025,839,000	202,570	0.0100
기타(레포, 대차,콜 등)	400,720,639,546	269,475	0.0001	165,010,203,457	116,393	0.0001
합 계	551,469,992,343	35,958,234	0.0065	190,236,644,081	10,196,176	0.0054

주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주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68

주 1)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운용펀드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8/23~2024/08/22	8,000	8,003	8,038	8,039	36	38	8,001	9,210
2024/08/23~2025/08/22	8,001	8,956	88	100	1,969	2,247	6,348	7,830
2025/08/23~2026/08/22	6,348	7,588	22,942	34,530	3,333	4,890	26,161	38,515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9/11~2024/08/22	0	0	0	0	0	0	0	0
2024/08/23~2025/08/22	0	0	0	0	0	0	0	0
2025/08/23~2026/08/22	0	0	0	0	0	0	0	0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9/13~2024/08/22	0	0	0	0	0	0	0	0
2024/08/23~2025/08/22	0	0	0	0	0	0	0	0
2025/08/23~2026/08/22	0	0	0	0	0	0	0	0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9/11~2024/08/22	0	0	0	0	0	0	0	0
2024/08/23~2025/08/22	0	0	0	0	0	0	0	0
2025/08/23~2026/08/22	0	0	0	0	0	0	0	0

(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9/13~2024/08/22	11	11	11	11	11	11	0	0
2024/08/23~2025/08/22	0	0	0	0	0	0	0	0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8/23~2024/08/22	8,000	8,003	8,000	8,000	0	0	8,000	9,169
2024/08/23~2025/08/22	8,000	8,953	0	0	1,739	1,986	6,321	7,763
2025/08/23~2026/08/22	6,321	7,554	18,165	27,400	3,000	4,436	21,532	31,557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6/01/26~2026/08/22	0	0	429	451	0	0	429	447

(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8/29~2024/08/22	6	6	27	28	0	0	27	31
2024/08/23~2025/08/22	27	30	27	32	7	8	48	59
2025/08/23~2026/08/22	48	57	315	462	132	194	232	340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6/01/02~2026/08/22	41	41	5,595	6,161	0	0	5,595	6,12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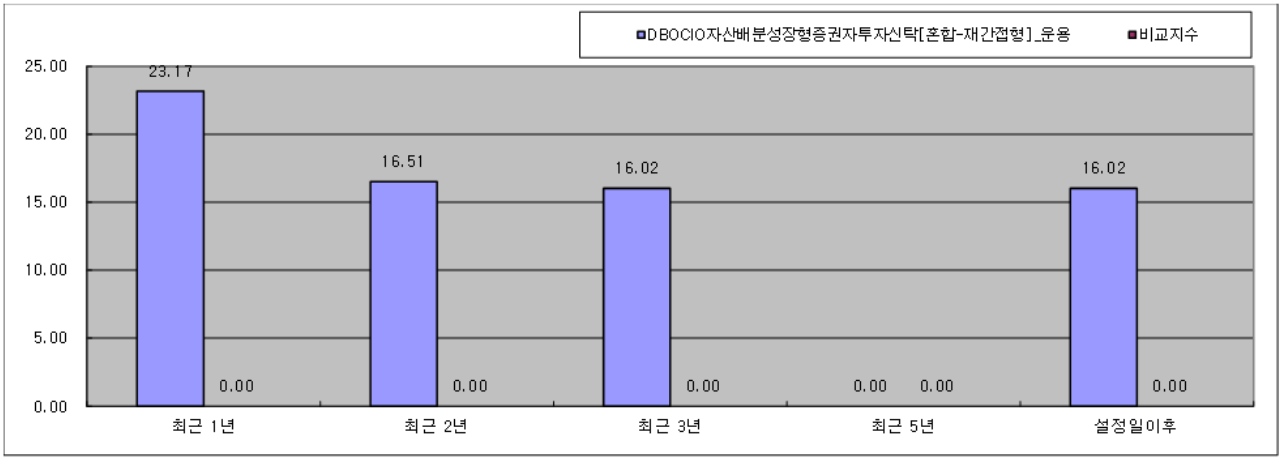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없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5/08/23 ~ 2026/08/22	2024/08/23 ~ 2026/08/22	2023/08/23 ~ 2026/08/22	2021/08/23 ~ 2026/08/22	
운용펀드	2023-08-23	23.17	16.51	16.02	0.00	16.02
비교지수	2023-08-23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 변동성	2023-08-23	9.85	8.90	0.00	0.00	8.5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09-11	23.13	16.43	0.00	0.00	16.02
비교지수	2023-09-11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9-13	22.69	16.09	0.00	0.00	15.76
비교지수	2023-09-1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9-11	23.06	16.40	0.00	0.00	16.05
비교지수	2023-09-11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9-13	0.00	0.89	0.00	0.00	5.28

비교지수	2023-09-1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2023-08-23	22.65	16.02	15.53	0.00	15.53
비교지수	2023-08-2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26-01-26	0.00	0.00	0.00	0.00	7.02
비교지수	2026-01-26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3-08-29	22.39	15.77	0.00	0.00	15.41
비교지수	2023-08-29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2026-01-02	0.00	0.00	0.00	0.00	14.97
비교지수	2026-01-02	0.00	0.00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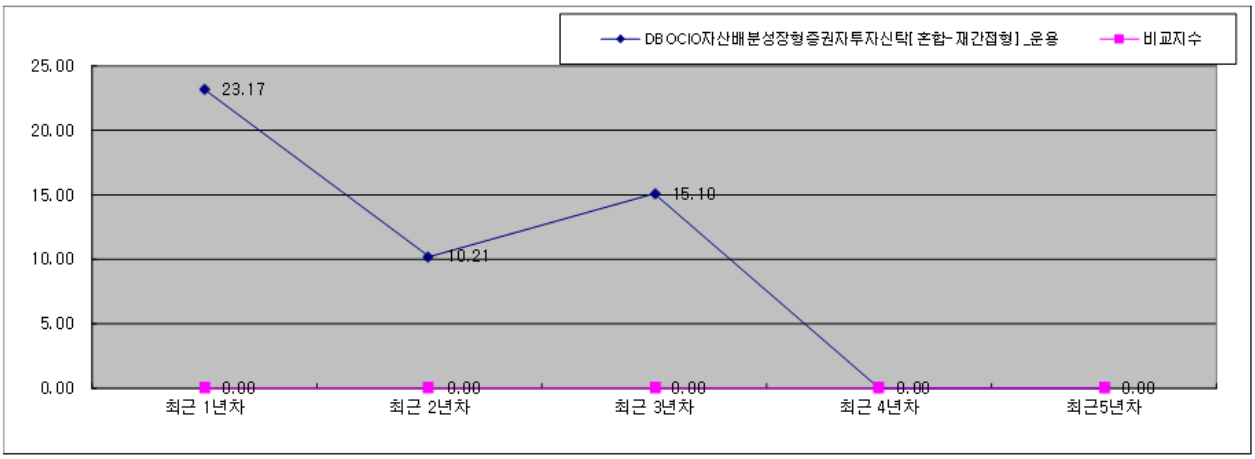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	최근5년차
		2025/08/23 ~ 2026/08/22	2024/08/23 ~ 2025/08/22	2023/08/23 ~ 2024/08/22	2022/08/23 ~ 2023/08/22	2021/08/23 ~ 2022/08/22
운용펀드	2023-08-23	23.17	10.21	15.10	0.00	0.00
비교지수	2023-08-2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3-09-11	23.13	10.09	15.16	0.00	0.00
비교지수	2023-09-11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3-09-13	22.69	9.85	15.04	0.00	0.00
비교지수	2023-09-1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3-09-11	23.06	10.10	15.29	0.00	0.00
비교지수	2023-09-11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3-09-13	0.00	1.78	15.21	0.00	0.00
비교지수	2023-09-1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C-F)	2023-08-23	22.65	9.74	14.61	0.00	0.00
비교지수	2023-08-23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26-01-26	7.02	0.00	0.00	0.00	0.00
비교지수	2026-01-26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3-08-29	22.39	9.50	14.71	0.00	0.00
비교지수	2023-08-29	0.00	0.00	0.00	0.0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3)	2026-01-02	14.97	0.00	0.00	0.00	0.00
비교지수	2026-01-02	0.00	0.00	0.00	0.00	0.00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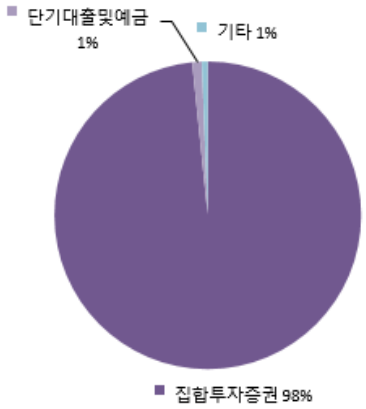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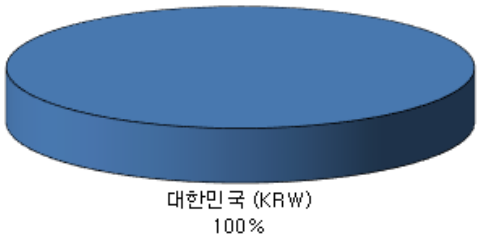
(2026.08.22 기준 / 단위: 백만,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0	0	0	37,894	0	0	388	239	38,521
	(0.00)	(0.00)	(0.00)	(98.37)	(0.00)	(0.00)	(1.01)	(0.62)	(100.00)
자산합계	0	0	0	37,894	0	0	388	239	38,521
	(0.00)	(0.00)	(0.00)	(98.37)	(0.00)	(0.00)	(1.01)	(0.62)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원차트 비중은 절대값 기준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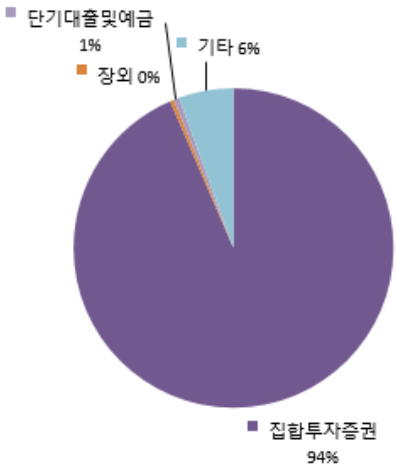
DBOCIO자산배분성장형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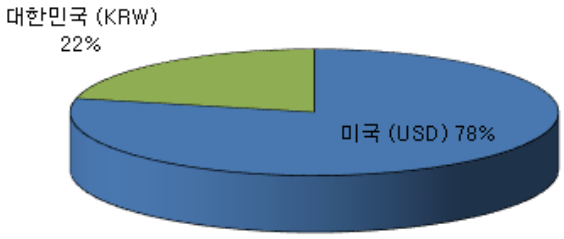
(2026.08.22 기준 / 단위: 백만,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미국	0	0	0	29,921	0	0	12	0	29,933
	(0.00)	(0.00)	(0.00)	(99.96)	(0.00)	(0.00)	(0.04)	(0.00)	(78.49)
대한민국	0	0	0	5,742	0	149	200	2,110	8,201
	(0.00)	(0.00)	(0.00)	(70.02)	(0.00)	(1.82)	(2.44)	(25.72)	(21.51)
자산합계	0	0	0	35,663	0	149	212	2,110	38,134
	(0.00)	(0.00)	(0.00)	(93.52)	(0.00)	(0.39)	(0.56)	(5.5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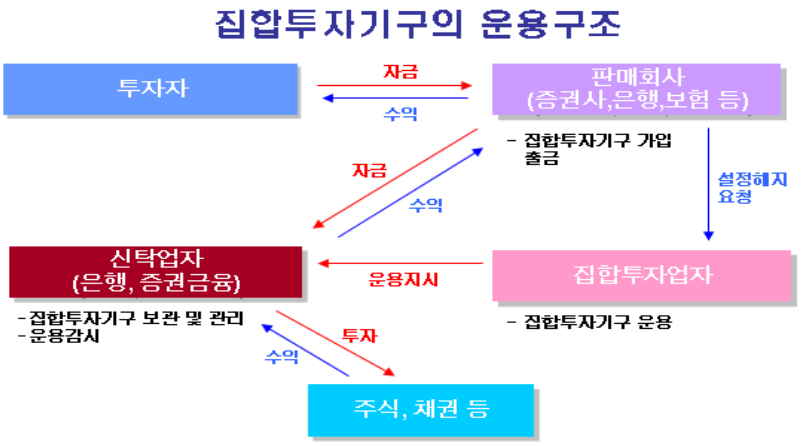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원차트 비중은 절대값 기준으로 표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02-787-3700)	www.db-asset.com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30기	29기
	(2025.12.31)	(2024.12.31)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7,178,173,600	9,179,642,842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809,765,881	5,958,795,014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17,439,897,674	15,143,408,793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38,864,748	1,134,674,736
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3,842,033,696	32,263,889,202
Ⅵ. 유 형 자 산	1,804,755,390	1,606,851,252
Ⅶ. 기타자산 외	5,633,258,456	6,626,742,026
자 산 총 계	73,546,749,445	71,914,003,865
Ⅰ. 기타부채	9,673,097,504	8,915,106,510
부 채 총 계	9,673,097,504	8,915,106,510
Ⅰ. 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8,751,918	1,896,529
Ⅲ. 이 익 잉 여 금	34,072,403,859	32,997,000,826
자 본 총 계	63,873,651,941	62,998,897,35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3,546,749,445	71,914,003,865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30기	29기
	(2025.12.31)	(2024.12.31)
Ⅰ. 영 업 수 익	34,763,066,793	27,410,790,959
Ⅱ. 영 업 비 용	33,058,265,888	28,039,573,494
Ⅲ. 영 업 이 익	1,704,800,905	-628,782,535
Ⅳ. 영 업 외 수 익	2,313,057,495	845,286,969
Ⅴ. 영 업 외 비 용	1,271,124,082	9,679,086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46,734,318	206,825,348
Ⅶ. 법인세비용	691,337,259	157,394,444
Ⅷ. 당 기 순 이 익	2,055,397,059	49,430,904

라. 운용자산규모(2026.08.27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6,481	2,474	47,449	47,113	5,685	2,498	10,387	861	30,568	153,51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 2가) (T: 02-3455-2114)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11층(02-6714-4600)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KIS 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15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삼보호정빌딩 9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3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3층
연락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00	02-721-5300	02-785-1410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DB뉴욕라이프글로벌자산관리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집합투자업자(DB자산운용)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납입과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투자승인일자	2023.06.15
투자집행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일시 투자 예정
투자금액	2억원
의무투자기간	-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유지 - 의무투자기간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의무투자기간 경과 전 투자금 회수 가능 요건	①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202조제1항 또는 법 제 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회수 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회수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③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2)추가투자

투자주체	집합투자업자(DB자산운용)
투자목적	고유재산 운용 및 적정 운용규모 확보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 투자 예정
최초 투자금액	23억원
투자기간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금의 회수는 투자기간이 경과 후 일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탁재산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에 따라 회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1차 : 9.13억좌(2024.12.17 환매청구)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